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-1339호

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(변경) 공고

부산광역시 서구 등대로 전면 해상(서방파제 일원)의 “ 부산남항 수제선(방재호안) 정비사업”에 대하여 「항만법」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을 하고,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공고합니다.

2022년 4월 20일
부 산 광 역 시 장

1.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(변경없음)
가. 성명 : 부산광역시장
나. 주소 :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(연산동)

2.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(변경없음)
가. 항만명 : 부산남항
나. 사업의 종류 : 토목

3. 항만개발사업의 목적(변경없음)
가. 부산남항내 태풍 내습시 월파 및 침수 등으로 인한 재해예방

4. 항만개발사업의 장소·규모·기간 및 방법
가. 장소 : 부산광역시 서구 등대로 전면 해상 (변경없음)
나. 규모 : - 방재호안 축조 L=543m : 변경없음
- 매립 및 부지조성 : 면적 증)증)501㎡
[당초 : A=20,653㎡, 변경 : A=21,154㎡]

다. 기간 : 당초 : 2018. 6. ~ 2021. 12
변경 : 2018. 6. ~ 2022. 12

라. 방법 : 설계도서에 따른 도급 시행 (변경없음)

5.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

가.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항만) 결정(변경) 조서

○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 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 정	변 경	증 감		
변경	117	항만	연안항	부산광역시 서구 등대로 전면 해상 (서방파제 일원)	20,653	21,154	증) 501	2018.06.06.	

○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내용	사유
117	항만	• 매립 및 부지조성 - 당초: 20,653㎡ - 변경 : 21,154㎡ 증)501㎡	• 방재호안 정비공사 시공성과에 따른 방재호안 계획(선) 변경 - 방재호안 L=543m : 변경없음 - 매립 및 부지조성 면적 : 증) 501㎡

○ 세부조성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도면표시 번 호	세부시설명	위치	면 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 정	변 경	증 감		
변경	117	항만기본시설 (방파제)	부산광역시 서구 등대로 전면 해상 (서방파제 일원)	20,653	21,154	증) 501	2018.06.06.	

6.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및 실시계획(변경) 사항

가. 사업시행지의 위치

○ 부산광역시 서구 등대로 전면 해상(서방파제 일원)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○ 사업의 종류 : 도시계획시설(항만)사업

○ 사업의 명칭 : 부산남항 수제선(방재호안) 정비사업

다.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

○ 방재호안 축조 L=543m, 매립 및 부지조성 A=21,154㎡

라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○ 성명 : 부산광역시장(건설본부장)

○ 주소 :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(연산동)

마.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

○ 착수예정일 : 2018. 6.

○ 준공예정일 : 2022. 12.

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·주소

○ 해당사항없음

7.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2조 및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

○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도 : 게재생략

8. 기타 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

관계도서 등은 부산광역시건설본부 토목시설부 토목1팀(☎051-888-6222)에 비치하고,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.(관계도서 게재 생략)